

韓國의 納本制度에 관한 研究

柳 寅 錫
(國立中央圖書館 司書官)

註: 이 論文은 延世大學校 大學院에 제출한 碩士學位 論文을 요약한 것이다.

1. 序 論

圖書館의 文化的 使命은 기록된 인류의 文化 재인 圖書 및 기타 資料를 수집하여 영구히 保存함과 동시에 이를 널리 이용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圖書館은 발생 초기의 文化遺産의 蓄積 및 傳承機能과 함께 時代가 발전하고 변동함에 따라 계속 成長·發展하여 圖書館의 機能은 일층 강화되었고, 意味 또한 보다 포괄적이며 多樣性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圖書館은 學術과 文化의 發展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社會機關으로서 文明社會의 불가결한 存在가 되었으며, 技術과 産業發展의 절대적인 資源이 되어 文化遺産의 蓄積 및 傳承機能 이외에 國家發展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學術과 文化遺産의 資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시키기 위한 方法의 일환으로 세계의 여러 國家에서는 國家政策으로 圖書館法, 著作權法, 納本法 등 關係法에 의거하

여 國內의 모든 出版物 및 其他 資料를 효율적이고 망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方法으로 納本制度를 실시하여 그 國家의 國立圖書館으로 하여금 그 機能의 주요 役割로써 그 國家의 대부분의 文獻을 收藏하게 하고 있다.

韓國은 1963年 10月 28日 法律 第1424号로 제정된 圖書館法과 1965年 3月 26日 大統領令 第2086号로 제정된 同 施行令에 의해서 國立中央圖書館이 國家文獻의 收藏을 위해서 1965년부터 納本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며, 國會圖書館이 또한 입법활동지원 목적을 위한 資料蒐集方法으로 1963認 10月 26日 法律 第1454号로 제정된 國會圖書館法¹⁾에 의해 1964년부터 納本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出版文化의 向上과 公共福利實現 및 美風良俗을 보호하기 위한 目的 등 行政機關의 監督手段으로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 및 同 施行令, 言論基本法 및 同 施行令, 그리고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 관한 法律 및 同 施行令에 의해서 文化公報部가 納本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주로 國家文獻 및 圖書館資料의 收藏을 위해서 納本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을 研究의 對象으로 삼았으며, 研究의 對象資料 또한 納本의 目的과 資料에 따라 광범위하고 다양하나 一般

1) 國會圖書館法은 機構改編에 의하여 國會事務處와 國會圖書館이 併합됨에 따라 1981年 2月 10

日 法律 第3368号로 國會事務處法으로 改正됨.

圖書에 限하였다.

그리고 本 研究는 納本의 目的과 資料에 따라 韓國의 納本制度和 外國의 納本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韓國의 納本制度에 따른 問題點을 제시 하고, 이의 改善方案을 찾으려 努力하였다.

2. 納本의 意義 및 目的

2.1 納本의 意義와 그 歷史

納本이란 用語를 關係文獻에서 찾아보면 “新刊圖書를 발행하였을 때, 또는 版權을 얻으려 할 때 法에 의하여 규정된 官庁이나 圖書館에 納入하는 圖書이다.”²⁾

“한 國家의 著作權法에 의하여 著作權局이나 指定된 圖書館에 제출한 책이나 다른 著作物의 無償副本이다.”³⁾ 그리고 “出版社(出版者) 혹은 印刷社(印刷者)가 自己들의 새로운 出版物을 法이 制定하고 指定하는 바에 따라 그 機關에 有償·無償으로 提供·納入하는 것을 말한다.”⁴⁾ 등 여러가지로 定義하고 있다. 英語表現도 納本目的에 따라 Legal deposit, Deposit copy, Copyright deposit 및 Copy tax⁵⁾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納本이란 著作權保護나 國家文獻의 收藏을 위해서 한 國家에서 새로 간행한 出版物, 또는 기타의 圖書館資料를 그 國家의 國立圖書館 또는 關係登錄庁에 有償 또는 無償으로 納入하는 資料라고 말할 수 있다.

이 制度의 기원을 보면 원래 絶對君主時代에 王權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최초로 프랑스로 프란시스(Francis) 1세가 1537年 12月 28日 몽페르에르(Montpellier) 法令 布告에 의하여 도서의 檢閱과 圖書印刷에 대한 특권부여의 目的으로 프랑스에 있는 모든 出版社와 印刷社는 著

者, 主題, 內容, 價格, 크기, 發行年度 및 言語에 구애하지 않고 예외없이 모두 다 브르와(Blois)에 있는 王室圖書館(Royal Library)에 새로 출판한 모든 圖書를 無料로 1部씩 納本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만약 이 法令을 이행하지 않는 者에게는 많은 罰金과 納本하지 않는 그 圖書의 出版量 全부를 몰수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였다고 한다.⁶⁾

英國에서는 최초로 圖書館資料의 收藏을 위해서 토마스 보들리卿(Sir Thomas Bodley 1545~1635)이 1610年 12月 12日 런던의 권위있는 出版業者組合인 스테이셔너스 컴퍼니(Stationer's Company)와 契約을 체결하고, 國內에서 발간되는 新刊圖書의 完全本 1部를 보들리圖書館에 무료로 기증해줄 것을 권유했다. 그 대신 同 圖書館으로부터는 책을 빌릴 特權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結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다.⁷⁾

그후 英國은 1709년에 제정된 英國著作權法(The British Copyright Act)과 앤法(The Statute of Anne)에 기초해서 納本制度가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美國은 上記의 英國著作權法에 기초해서 1790年 최초로 著作權法이 議會에서 통과되고 1846년에는 同法에 의해서 新刊圖書 2部가 納本되어 1部는 議會圖書館(The Library of Congress)에, 다른 1部는 스미드니안研究所(The Smithsonian Institution)에 비치되었다.⁸⁾

美國의 著作權法은 1909年 및 1976년에 全面改正되었으나 納本關係條項은 1971年 納本資料의 種類에 錄音盤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改正되지 않았다.

이외의 國家도 이미 오래전부터 關係法에 의해서 納本制度를 실시해서 그 國家의 文化 및

2)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用語集, 1966. p. 20.

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The Association, 1943, p. 38.

4) 李漢龍, “著作權保護와 納本”, 도서관통권 101호, 1966, 1, p. 33.

5) 上揭論文, p. 33.

6) 上揭論文, p. 33.

7) Sidney L. Jackson,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the West—A Brief Histor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4, p. 150.

8)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6, Copyright Section, New York, Marcel Dekker Inc., 1971, pp. 34~36

學問發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2.2 納本の 目的

納本制度의 주요 目的은 著作權保護, 國立圖書館에 대한 圖書館資料의 收藏 및 行政機關의 監督手段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2.1 著作權의 保護를 받기 위해서

著作權은 著作者와 著作物의 關係에 있어서 著作物이 著作者의 精神的 勞動의 所産으로서 客觀的 實體의 일면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著作者의 經濟적 利益에도 봉사하고 있으므로 人格權과 財産權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⁹⁾

이러한 權利의 保護를 위해 著作權法이 발생된 것으로 著作權法의 目的은 著作者의 財産權, 人格權의 양자에 대해서 필요한 規程을 설정하고, 企業家가 著作物의 복제라는 商品化의 手段을 獨占하여 著作物을 사회에 유통시킴으로써 文化向上을 이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¹⁰⁾

최초의 著作權 保護對象은 文字나 繪畫에 의한 著作物에 限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나 活版印刷術이 발명되고, 보급됨에 따라 圖書, 기타 出版物의 大量生産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수많은 기계 및 기술의 발명으로 인해 写真, 音盤, 映畫 필름 등 새로운 형식의 著作物이 포함된 것이다.

著作權法의 效力發生은 美國과 같이 議會圖書館 著作權登錄庁에 納本하여 登錄手續을 完了했을 때 著作權의 效力發生과 함께 保護를 받게 되는 方式主義와, 우리나라 著作權法이나 베른조

약(Berne Convention)¹¹⁾과 같이 著作物이 생산되었을 때 곧 效力의 發生과 함께 著作權保護를 받게되는 無方式主義가 있다.

그러나 無方式主義를 취한다 해도 著作權變動의 對抗要件으로서 등록의 節次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著作權과 納本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著作權登錄을 위해 關係登錄庁에 納本을 한다는 것은 著作權保護의 立場에서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2.2 國立圖書館에 收藏하기 위해서

圖書館이 文化, 社會 및 教育的인 면과 産業 및 技術發展에 차지하는 貢獻과 役割은 참으로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圖書館이 본래의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諸圖書館資料를 빠짐없이 收藏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圖書館資料를 망라해서 收藏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世界 各國은 國內資料만이라도 가능한 완전히 收藏하기 위해서 國家文獻의 收藏을 國立圖書館의 첫째 機能으로 삼고 있으며, 國家에 따라 圖書館資料의 種類는 차이가 있으나 關係法에 의해서 國家文獻을 納本케 하여 文化創造와 國家發展의 자료로 이용하도록 法的으로 制度化하고 있다.

世界 주요국의 納本制度에 대한 關係法을 보면 韓國과 日本은 圖書館法에 의하여, 美國과 英國은 著作權法에 의하여, 불란서와 덴마크 등은 納本法서 의하여 이 制度의 法的인 뒷받침을 하

9) 半田正夫, 著作權法의 研究, 東京, 一粒社, 1971, p. 3.

10) 李漢龍, 前掲論文, p. 32.

11) 著作權의 國際적 保護에 關心을 가진 者와 各國의 文學者로 조직된 國際文芸家協會는 자기들의 著作物을 保護하기 위하여 國內 및 國際的인 立法을 촉진하는 運動을 전개했다.

따라서 스위스政府의 주선에 의해 여러 會議를 거쳐 1886年 9月 9日 베른條約(Berne Convention)의 成立을 보게 되었다.

正式名稱은 文學 및 美術的 著作物에 대한 베른

條約(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이 條約의 特色은 內國民優待의 原則을 수립하고, 各 同盟國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인정해야 할 著作權의 範圍를 규정하고 있다.

이 條約이 유럽國家가 中心인데 반해 美國이 주동이 되어 만든 條約으로 1952年 유네스코주선으로 로마에서 만들어진 世界著作權條約(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 있다.

고 있다.

2.2.3 行政機關의 監督手段으로서

民主主義를 國是로 표방하는 近代國家에서는 國民의 基本權으로서 言論과 出版의 自由를 國家의 基本的인 憲法에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言論과 出版은 原則적으로는 自由이나 그렇다고 해서 自由를 무제한하게 방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出版의 自由도 限界內에서 누려야하고 出版物을 간행한 후에는 법에 따라 行政的인 監督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行政機關의 監督手段으로 國內 出版物 및 일부 外國輸入出版物에 대해서 主務行政官廳에서 納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納本制度는 行政管理業務의 일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歴史的으로 볼 때에는 出版物의 檢閲로 國家에 대한 유해한 作用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納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行政機關의 監督手段으로서의 納本은 出版物의 檢閲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 國家에서는 이미 이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2.3 納本資料의 利用

納本資料의 利用에 관한 問題는 實제적으로는 納本目的의 範圍밖의 일이다. 國立圖書館에서 國家文獻을 收藏하는 일이 納本目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納本은 취급하는 資料의 量이나 多樣性을 고려한다면 納本에 대한 責任의 範圍는 보다 광범위하게 되었다.¹²⁾

이에 따라 納本資料利用에 대한 問題가 고려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事項 중의 하나가 國家書誌發刊을 위한 資料를 마련하는 일이다.

國家書誌는 納本받는 資料에 의하여 發刊이

가능하며, 그 資料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이용되도록 納本된 후에는 國家書誌를 지체없이 編纂, 發刊하여야 한다.

理想的인 方法으로는 發刊일 전에 出版物 納本을 받아서 納本과 동시에 國家書誌가 발간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체로 國家書誌는 週刊으로 發刊되며, 이를 종합하여 季刊, 또는 年刊으로 발간한다. 따라서 世界各國은 取録內容은 國家에 따라 差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國家書誌를 발간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경우는 圖書館法이 制定, 公布됨에 따라 納本制度가 실시되어 國家書誌作成에 대한 認識이 싹터서 韓國書目¹³⁾이란 명칭으로 國立中央圖書館이 1964年 10月 國家書誌를 처음으로 간행하였으며, 그후에는 納本資料에 의거 문헌정보¹⁴⁾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것을 종합하여 年刊으로 大韓民國출판물 총 목록¹⁵⁾을 발간하고 있다.

이와 같은 納本資料에 의한 國家書誌 發刊은 각국의 國立圖書館의 機能을 강화시켰으며, 서지정보의 현대적인 관리에 관한 認識은 새로운 次元으로 발전하여 世界書誌統整(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의 必要性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國家書誌는 그 나라 出版情報의 완벽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世界書誌統整에 있어서도 基本書誌인 것이다.

3. 納本制度

3.1 外國의 納本制度

3.1.1 美國

美國의 納本制度는 1790年에 제정된 著作權法

12) Gillermo Gustavino, "The Problem of Legal Deposit, its Advantages, Possible Courses of Action"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XIII, No. 1, 1968, 1, p. 7.

13) 1945年부터 1962년까지 國內에서 간행된 出版物 目錄으로 一般圖書, 定期刊行物, 碩·博士學位論

文을 수록하였음.

14) 1965年부터 출판물납본월보라는 題号로 발간하다가 1968年부터 간행된 정책자료속보를 합병하여 1972年 문헌정보로 改題하여 간행함.

15) 1963年 및 1964年 2年間 納本된 資料를 1965年 간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에는 年刊으로 간행함.

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이 著作權法 중에서 納本關係條項을 간단하게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出版과 告示(Publication Work with Notice)로서 著作權을 보장받고자 하는 者は 著作權의 告示로서 이루어지고, 이 告示는 모든 圖書에 표시된다.

② 출판후의 納本(Deposit Copies after Publication)은 完全本 2部를 著作權登錄庁에 行한다. 外国人이나 外国에서 出版된 것은 1部를 納本하고 納本이 어려운 圖書는 議會圖書館의 인정하에 写真이나 複写를 하여 納本하게 한다.

③ 納本の 不履行, 要求, 罰金(Failure to Deposit, Demand, Penalty)은 美国本土 에서는 3個月 이내에 本土 이외의 領土나 外国에서는 6個月 이내에 納本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100弗의 罰金과 그 出版物 小売價格의 2倍를 지불해야 하며 著作權은 무효가 된다.¹⁶⁾

그리고 納本資料의 種類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圖書, 定期刊行物, 演說文, 戲曲, 樂譜, 地圖, 芸術作品의 模型, 写真, 映画劇, 音盤 등이다.

3.1.2 英国

英国의 納本制度는 著作權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특징은 納本部數는 各 1部씩이나 納本圖書館은 大英圖書館 외에 옥스포드大學 보들리圖書館, 캠브리지大學圖書館, 스코틀랜드 國立圖書館, 더블린市 트리니티大學圖書館 및 웨일즈 國立圖書館 등 6個處이다.

그리고 納本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罰過金 및 그 圖書의 冊價에 해당하는 金額을 반드시 圖書를 納本해야 하는 圖書館에 지불해야 한다.

納本資料의 種類는 冊, 小冊子, 낱장의 印刷物, 樂譜, 地圖, 設計圖, 版畫 등이다.¹⁷⁾

3.1.3 佛蘭西

佛蘭西의 納本制度는 納本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納本資料의 種類로서 圖書, 雜誌, 팸플릿, 木版畫, 銅版畫, 그림엽서, 포스터, 樂譜, 写真, 映画, 音盤 등이다. 納本部數는 일반 印刷物인 경우에 4部를 파리地域에서는 國立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하고, 기타 地域에서는 教育部의 命令에 따라 權限이 주어진 주립도서관에 納本한다.

納本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10,00프랑내지 15,000프랑의 罰金, 再次 불이행의 경우는 15,000프랑 내지 50,000프랑의 罰金에 처한다.¹⁸⁾

3.1.4 日本

日本은 1948年(昭和 23)에 제정된 國立國會圖書館法에 의하여 現行納本制度를 실시하고 있는데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納本資料의 種類는 圖書, 小冊子, 逐次刊行物, 樂譜, 地圖, 映画技術에 의하여 저작된 著作物, 錄音盤 등이다.

納本은 發行日로부터 30日 이내에 1部를 國立國會圖書館에 納本하고, 일반 出版物인 경우에는 納本한 者에 대해서 보통의 出版物은 定價의 5割로 補償하고, 기타의 出版物은 資料에 따라 다르게 補償한다.

納本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出版物의 小売價格의 5倍에 상당하는 金額 이하의 過料에 처한다.¹⁹⁾

3.2 韓國의 納本制度

韓國의 納本制度는 國家文獻을 收藏하기 위해서 國立中央圖書館이 행하고 있는 納本과 立法活動의 支援을 위해서 國會圖書館이 행하고 있는 納本 및 出版文化의 向上을 위한 行政機關

16) United States Code, 1976 edition Vol. 4, Copyright Section, Washington,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pp. 945~947.

17) 日本新聞協會 編, 各國出版法規 上, 東京, 同協會, 昭和26(1951), pp. 41~44.

18) 張一世, "各國納本制度에 관한 考察", 出版文化,

1966, 12, p. 5, 申學均, "外國의 納本制度," 도서관, 통권 114호, 1967, 2, p. 5 및 姜量達 訳, "各國의 出版物納本規程," 國會圖書館報, 3권 10호 1966, 11, p. 29.

19) (日本) 現行法規總覽, 第2編, 東京, 第一法規, 昭和 25(1950), pp. 656~657.

의 監督手段으로서 文化公報部가 행하고 있는 納本으로 구별된다.

3.2.1 國立中央圖書館

國家文獻의 取藏과 國際交換을 目的으로 圖書館法, 同 施行令 및 國際交流를 위한 圖書館資料 納本規程에 의하여 納本制度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內容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國家機關이 官報, 圖書, 其他 刊行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가 公報, 圖書, 其他 刊行물을 발간한 때에는 2~3部를 國立中央圖書館과 그가 설립한 公共圖書館에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③ 출판사 또는 그 이외의 者가 圖書 기타 刊行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刊行物の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납본하여야 한다.

④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이외의 者가 그 刊行물에 대한 實費補償을 청구한 때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實費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상 圖書館法 第12條).

⑤ 納本을 이행하지 않는 者는 當該 刊行物 定價의 5배에 상당하는 金額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圖書館法 第29條).

한편 國際交換을 위한 納本으로는 政府刊行物로서 30日 이내에 발간부수에 따라 20~30部를 協助要請에 의해 納本하게 하고 있다.

納本資料의 補償에 있어서는 國立中央圖書館과 大韓出版文化協會間의 協의에 의해 大韓出版文化協會 理事會의 결의를 거쳐 定價의 50%로 결정했으며, 納本業務는 1965년부터 同 協會가 代行하고 있다.²⁰⁾

3.2.2 國會圖書館

國會圖書館은 立法活動의 支援을 위해 資料取藏과 國際交換을 目的으로 國會事務處法과 國會圖書館法에 의한 出版物納入에 관한 內規²¹⁾에 의해서 納本制度를 실시하고 있는데 主要骨子

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國家機關 또는 公共團體가 資料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當該資料 30部를 發行日로부터 30日 이내에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國會圖書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國家機關 및 公共團體 이외의 者가 발행한 모든 出版物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發行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2部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일반 出版社가 발행하는 一般圖書는 定價의 5割의 金額을 보상한다.

④ 豪華出版物, 記念出版物, 限定出版物, 非売出版物, 無定價出版物 등의 특별한 出版物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별도로 정하여 보상한다.

⑤ 重刊, 兒童漫畫, 中·高校教材 및 參考書, 內容이 저속한 出版物, 新聞, 通信과 錄音盤 등은 納本에서 제외한다.

納本業務는 여기에도 大韓出版文化協會에서 1965년부터 행하고 있다.

3.2.3 文化公報部

文化公報部는 出版文化向上, 公衆의 安寧秩序 및 民族固有의 美風良俗을 보호하기 위해 諸盤法令에 의해 納本制度를 실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內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 및 同 施行令에 의해서 등록된 出版社가 간행물을 출판하였을 때에는 販賣 또는 반포 15日前까지 그 出版物 2部를 登錄庁을 거쳐 文化公報部長官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이는 單行本에 대한 納本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00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② 言論基本法 및 同 施行令의 規定에 의해서 등록된 者가 定期刊行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2部를 즉시 文化公報部에 납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③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 관한 法律 및 同 施行令의 規定에 의해서 許可를 받은 者는 外國定

20) 大韓出版文化協會, 大韓出版文化協會 二十五年史, 서울, 同協會, 1972, p. 140.

21) 國立圖書館法은 國會事務處法으로 改正되었으나 이 內規는 아직 改正되지 않았음.

期刊行物を 수입할 때에는 그때마다 배포하기 48時間前에 그 刊行物 2部를 文化公報部長官에 納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그 刊行物 輸入原價의 3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처하고 個人이 소유하는 刊行物은 몰수한다.

4. 韓國의 納本制度에 있어서 問題點

4.1 納本資料의 種類

納本資料種類的 範圍는 주요한 論點으로 여러 國家의 關係法에서 보는 바와 같이 種類가 다양하며, 이에 대한 理論 또한 相異한 것이다.

전통적인 理論은 單行本, 팜플릿 및 雜誌를 納本資料의 種類로 들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資料가 納本資料의 種類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單行本이나 雜誌에 대한 納本의 重要性은 명백하지만 사소한 出版物(Lesser Publication)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納本을 강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資料가 너무 과소평가되어서도 안된다.

사소한 資料는 넓은 意味에서 國家書誌作成의 可能性을 갖게하며, 特殊書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未來歷史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資料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書誌作成의 側面을 떠나서도 사소한 出版物은 歷史記錄의 가치있는 귀중한 資料가 되며, 각종 印刷物, 國家의 祝祭에 관한 写真資料, 藝術的 가치가 있는 포스터, 都市開發이나 戰爭에 파괴되기 전의 거리나 記念物에 대한 複写物, 그림엽서 등 이러한 資料는 收藏해서 後孫에게 물려줄 義務가 있는 것이다.²²⁾

그러나 納本資料의 種類는 이러한 出版物에 한하지 않고, 文化生活의 表現手段으로 彫刻品, 슬라이드, 필름, 錄音盤 등 視聽覺資料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비교하여 韓民의 納本資料의 種類는 주

로 單行本과 定期刊行物에 限하고 있으며, 國立中央圖書館의 경우는 單行本 중에서 重版本과 漫畫는 제외시키고 있고 政府刊行物에 있어서는 保安業務規程에 의해 비밀에 속하는 資料는 納本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法上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부의 錄音盤과 地圖 등은 현재 法令上의 기타 刊行物이라는 해석하에 納本되고 있다.

國會圖書館의 경우는 單行本 중에서 重版本, 兒童圖書, 漫畫, 中·高生의 學習參考書와 定期刊行物 중에서는 新聞이 納本對象資料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의 納本資料의 種類는 극히 일부 資料에 한정되어 있어 文化遺產蓄積 및 保存을 위한 圖書館資料의 收藏機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4.2 納本받는 機關

納本業務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納本받는 機關을 一元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納本하는 機關은 國立圖書館이나 이와 유사한 國家에서 지정한 機關이라 할 수 있다.

韓國의 納本받는 機關은 納本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 및 文化公報部로 3元化 되어 있다.

이렇게 多元化 되어 있는 納本制度는 納本目的, 納本資料의 種類 및 納本期間이 다르기 때문에 納本義務者에게 일의 번거로움과 財産上의 被害를 준다.

4.3 納本資料의 保存策

納本資料의 保存은 資料의 量이나 種類의 多樣性, 그리고 수용할 空間 등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와는 별도로 실제적인 개개의 納本資料의 保存에 있어서 韓國은 外國과 같이 별도의 機構나 書庫를 따로 두어 納本資料를 영구히 보존하지 않고 모두 利用시키므로 해서 原形保存이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著作權

22) Guillermo Gustavino, op cit., pp. 3~4.

에 대한 紛爭이 있을 경우 文化公報部에서는 단순히 著作物에 대한 登錄만 행하고 있으므로 證據提示가 곤란하다.

4.4 納本에 대한 補償

納本에 대한 補償은 原則적으로 無料인 경우가 많으며, 韓國과 日本 등이 實費補償을 규정하고 있다.

韓國은 현재 定価의 5割로 보상하고 있고, 特殊出版物에 대해서는 별도의 補償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圖書館側의 努力없이 이러한 資料의 수집이란 不可能하다고 보겠다.

有償의 納本制度는 無償의 制度보다 훌륭한 制度로 볼 수 있겠으나 美國과 같이 納本과 동시에 著作權을 획득함으로써 해서 著者나 出版社에게 직접 간접으로 利益을 주는 無償의 制度보다 實제적으로 좋은 制度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韓國의 納本資料에 대한 補償은 制度面에서나 金額에 있어서 問題점이 있다.

위에 열거한 問題점 이외에도 納本補償金の 予算不足과 納本不履行時 罰則條項이 미약한 것을 들 수 있다.

5. 結論

세계의 여러 國家가 納本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著作權保護와 國家文獻의 收藏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納本制度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納本資料의 種類, 納本받는 機關, 納本資料의 保存, 納本에 대한 補償 등 納本制度에 대한 전반적인 問題점이 解決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關係法規가 改正 또는 補完되어야 한다.

그러나 韓國의 現行 納本制度는 著作權法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著作權에 대한 保護를 받을 수 없으며, 圖書館法 또한 未備점이 많아 國家文獻의 完全收藏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關係法을 改正하는 것과 동시

에 다음과 같은 納本制度에 대한 問題점을 補完하여 著作權保護와 함께 國家文獻의 收藏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첫째, 關係法의 改正을 들 수 있는데, 國立中央圖書館權限下에 著作權登錄과 동시에 納本이 되며, 이에 따라 著作權이 보호되도록 著作權法이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 著作權法施行 主務官庁이 文化公報部인데 이 業務를 國立中央圖書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問題가 따를 것이다.

그리고 實제적인 業務遂行面에서도 著作權의 登錄業務와 納本業務가 분리되면 業務도 복잡하며, 納本義務者에게 많은 不便을 주게 된다.

둘째, 納本資料의 種類로서 現在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일부의 錄音盤, 카세트, 地圖 등의 資料를 納本받고 있지만 이는 法의 明確한 뒷받침이 없으며, 주로 一般圖書나 定期刊行物에 관해서 納本을 받고 있으므로 納本資料의 範圍를 확대해서 팸플릿을 포함한 사소한 出版物과 地圖, 錄音盤, 映画필름 등 視聽覺資料까지 納本資料의 種類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納本받는 機關으로서 現在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 및 文化公報部로 3元化되어 있는 納本받는 機關을 納本義務者에게 業務를 간편하게 하고, 財産上의 被害를 줄이며, 또한 國家文獻의 完全收藏과 國家書誌의 統整을 위해서 國立中央圖書館으로 一元化 해야 한다.

넷째, 納本資料의 保存은 國立中央圖書館 내에 納本登錄庁을 신설하여, 納本業務를 별도로 취급하고, 별도의 書庫를 설치하여 納本資料를 영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現行 圖書館法에 근거해서 納本資料의 補償은 實질적으로 5割로 하고 있으나 特殊圖書의 補償을 위해 國立中央圖書館 내에 이에 대한 審議機構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기타 納本業務의 實제적인 問題로서 納本補償金の 予算增額과 納本制度에 대한 弘報 問題를 들 수 있다.